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98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김윤덕·김정호·김철민

김홍걸 · 박상혁 · 안호영

윤재갑 • 이규민 • 이원욱

임종성 · 정춘숙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또한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은 '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'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 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, 소상공인

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 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4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(이하"방역조치"라 한다)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2조의5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  - ②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.
 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5의 심의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.
  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방역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감액,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

경우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- ⑥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5(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 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,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한다.
  -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방역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,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자료제출 요청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  - 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 기준 등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손실보상지역심의위원회(이하 "지역심의위원회"라 한다)을 둘 수 있

- 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역심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⑥ 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6(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,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 - 1.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
  - 2.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ㆍ처리
  - 3.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
  - 4.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전담조직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4(「감염병의 예방 및
	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
	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)
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
	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
	따른 조치(이하 "방역조치"라
	한다)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
	은 경우 제12조의5에 따른 심
	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
	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
	한다.
	②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 및
	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
	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
	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
	관이 정한다.
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
	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5의
	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
	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
	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

<u>상할 수 있다.</u>

-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보상금의 감액,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12조의5(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제12조의4에 따른 보 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 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, 기준, 규모,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<신 설>

에게 제시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방역조치 의 수준,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,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 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(그 소 속기관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 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은 「국 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 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적정 한 손실보상 기준 등을 심의위 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 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 및 특별자치도에 손실보상지역 심의위원회(이하 "지역심의위 <신 설>

원회"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역심 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 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 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⑥ 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12조의6(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,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- <u>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</u> <u>사항을 수행한다.</u>
- 1.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
- 소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・
   처리
- 3.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4.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
- ③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# 로 정한다.